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34호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63호 부동산 개업공인증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사항 일부변경 고시 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668호 보상계획 정정 열람·공고 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673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5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39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63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사항
일부변경 고시

「공인중개사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 지정사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3. 29.

인천광역시장

1. 교육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 지부
2. 위탁기간: 2019. 1. 1.~2020. 12. 31.(2년)
3. 소재지(교육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1동 401호
4. 위탁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5. 교육 수강료(변경사항)
 - 실무교육 130,000원, 연수교육 60,000원, 직무교육 40,000원
 - ※ 연수교육 수강료가 당초 70,000원에서 60,000원으로 변경 승인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668호

보상계획 정정 열람 ·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장미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장미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장미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6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5,654㎡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 1가)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대상 :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참조
- 보상금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항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음)
- 보상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동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협의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계좌 입금

3.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기간
 - 정정 전 : 2019. 3. 25. ~ 2019. 4. 8.(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정정 후 : 2019. 3. 29. ~ 2019. 4. 12.(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서부공원팀(☎032-440-5953)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1가, 월미공원사업소)
- 이의신청방법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연수구 연수동 (21필지)	137-1, 137-17, 136, 136-1, 136-2 136-6, 136-7, 137-2, 137-16, 138-1, 471-2, 471-3, 471-4, 471-5, 640-15, 산60, 산61-19, 산62, 산64-2, 산64-3, 산65
물건	위 토지상에 지장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개별 통지문 참조

5. 기타 사항

-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우리사업소에 연락 바라며, 아울러 토지 및 지장물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서부공원팀(☎032-440-59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673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 3.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인천도시공사
3.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4번지 일원
4. 면 적: 881,975.4m²
- 토지이용현황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총 계	881,975.4	100.0	
주 거 용 지	189,444.7	21.5	
공 동 주 택	160,353.8	18.2	
단 독 주 택	4,407.8	0.5	
준 주 거 시 설	24,683.1	2.8	근린생활시설
상 업 용 지	52,980.1	6.0	
일 반 상 업	52,980.1	6.0	
유 통 시 설 용 지	37,261.7	4.2	
물 류 · 유 통 시 설	37,261.7	4.2	
기 반 시 설 용 지	595,761.7	67.6	
학 교	325,153.5	36.9	대학교(2개소) -인천대,청운대 존치 초교(1개소) -서화초교 존치, 고교(1개소), 유치원(2개소)
노 유 자 시 설	495.8	0.1	어린이집(1개소)
공 원	58,423.8	6.6	6개소
녹 지	34,909.8	4.0	
공 공 공 지	197.0	0.02	
공 공 청 사	32,615.9	3.7	5개소 (쑥골어린이도서관 존치)
주 차 장	6,884.0	0.8	5개소
광 장	4,512.1	0.5	
도 로	132,569.8	15.0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유 수 지	(3,992.0)	(0.5)	저류시설 (공원과 중복결정)
기 타 시 설 용 지	6,527.2	0.7	
주 유 소	912.4	0.1	1개소
종 교 용 지	1,871.8	0.2	2개소
업 무 시 설	3,743.0	0.4	

5. 준 공 일 자: 2019. 3. 29.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용지(도로, 광장, 녹지, 공원, 유수지)는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에 무상귀속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39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시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시정 현안에 맞춰 당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정책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함(안 제명 등)
-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범위와 실시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등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 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에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 마.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당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를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책 등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3항의 “법무”를 “도시재생(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를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명)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성별영향 분석평가법</u>」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u>성별영향분석평가</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성별영향분석평가</u>”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u>분석평가</u>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u>성별영향분석평가</u>(이하“<u>분석평가</u>”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u>분석평가</u>의 중요성을</p>	<p><u>(제명)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u></p> <p>제1조 (목적) ----- 「<u>성별영향 평가법</u>」 ----- ----- -----<u>성별영향평가</u> ----- ----- -----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u>성별영향평가</u>”----- ----- ----- ----- <u>평가</u>하여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성별영향평가</u>----- ----- ----- -----.</p> <p>③ ----- <u>성별영향평가</u> -----</p>

현행	개정안
<p>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 ----- ----- -----</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분석평가</u>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성별영향평가</u> ----- ----- ----- ----- -----</p>
<p>제2장 <u>분석평가의 실시</u></p>	<p>제2장 <u>성별영향평가의 실시</u></p>
<p>제5조(<u>분석평가 대상</u>) ① 시장은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u>분석평가</u>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p>제5조(<u>성별영향평가 대상</u>) ① --- 「<u>성별영향평가법</u>」 ----- ----- -----<u>성별영향평가</u>----- ----- ----- ----- -----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u>분석평가</u>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 <u>성별영향평가</u> ----- -----</p>
<p>제6조(<u>분석평가의 고려사항</u>) 시장</p>	<p>제6조(<u>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분석평가</u>를 하고 <u>분석평가서</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u>분석평가</u>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p> <p>4. 그 밖에 <u>분석평가</u>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p>	<p>-----</p> <p>-----<u>성별영향평가</u>-----</p> <p><u>성별영향평가서</u>-----.</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성별영향평가</u> -----</p> <p>-----</p> <p>4. ----- <u>성별영향평가</u> -----</p> <p>-----</p>
<p>제7조(<u>분석평가의 시기</u>)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u>분석평가</u>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7조(<u>성별영향평가의 시기</u>) -----</p> <p>-----</p> <p>----- <u>성별영향평가</u>-----</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 (<u>분석평가서의 작성</u>) 시장은 <u>분석평가</u>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분석평가서</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8조 (<u>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u>) -</p> <p><u>성별영향평가</u> -----</p> <p>----- <u>성별영향평가서</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9조(<u>분석평가결과의 반영</u>) 시장은 <u>분석평가</u>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9조(<u>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u>)-</p> <p>-- <u>성별영향평가</u> -----</p> <p>-----</p> <p>-----</p> <p>-----</p> <p>-----</p> <p>-----</p>
<p>제10조(<u>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u>)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4항에</p>	<p>제10조(<u>특정성별영향평가</u>)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p>

현행	개정안
<p><u>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 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u></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장은 <u>분석평가</u>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장 <u>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u></p> <p>제1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u>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정한다.</u></p> <p>제10조의2 (정책 등 개선 권고)</p> <p>① 시장은 <u>제10조에 따른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u>성별영향평가</u>-----</p> <p>-----</p> <p>-----</p> <p>-----</p> <p>제3장 <u>성별영향평가위원회</u></p> <p>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u>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현 행	개 정 안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p> <p>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p> <p>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忍智)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p> <p>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p> <p>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p> <p>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3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법무·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생략)</p>	<p>제1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예산 · 도시재생(계획)</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성별영향평가</u> -----</p> <p>-----</p> <p>3. (현행과 같음)</p>
<p>제4장 <u>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u></p>	<p>제4장 <u>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u></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u>분석평가</u> 관련 소속 국장을 <u>분석평가책임관</u>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분석평가책임관</u>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6조에 따른 <u>분석평가</u>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u>분석평가서</u>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u>분석평가</u> 결과의 반영,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생략) 5. 제21조에 따른 <u>분석평가</u>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u>분석평가</u>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u>분석평가</u>에 관한 사항 	<p>제2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u>성별영향평가</u> ----- <u>성별영향평가책임관</u>----- -----.</p> <p>② ----- <u>성별영향평가책임관</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성별영향평가</u> -----<u>성별영향평가서</u> ----- 3. ----- <u>성별영향평가</u> -- ----- ----- -- 4. (현행과 같음) 5. ----- <u>성별영향평가</u>---- ----- 6. ----- <u>성별영향평가</u>---- ----- -----<u>성별영향평가</u> ----- ----
<p>제21조(분석평가 교육) ① 시장은 <u>분석평가</u>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u>분석평가</u>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분석평가</u>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u>분석평</u></p>	<p>제21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u>성별영향평가</u>----- ----- <u>성별영향평가</u> ----- -----</p> <p>② ----- <u>성별영향평가</u> ----- ----- <u>성별영향평</u> <u>가</u> -----</p>

현 행	개 정 안
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발취사항

「성별영향평가법」 [제명개정 2018. 3. 27.]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목개정 2018. 3. 27.]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7.>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목개정 2018. 3. 2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사업임 (비예산 사업)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조진숙